

國有特許權處分・管理規程施行規則

(商工部令 第495號)

—1976年 10月 28日 公布—

第1條 (目的) 이규칙은 국유특허권처분·관리규정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第2條 (政府機關의 無償實施) 영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기관의 장이 국유특허권을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정부기관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실시할 때에 한한다. 다만, 3년을 초과하여 실시하게 될 때에는 유상으로 한다.

第3條 (專用實施權 등의 實施期間) 영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여하는 경우에 그 실시기간을 3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당해 국유특허권을 기업화 하는데 필요한 준비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된다고 인정될 때
2. 당해 국유특허권의 존속기간만료일이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여에 관한 계약일로부터 4년 미만일 때

第4條 (豫定價格의 決定基準) ① 국유특허권의 매각 예정가격은 다음에 제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.

1. 국유특허권의 존속기간중의 실시료 총 추정액
2. 제1호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유사특허권의 매매 실패가격

② 유상으로 국유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을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여 하거나 정부기관이 유상으로 국유특허권을 실시하는 경우의 그 실시료의 예정가격은 다음에 제기한 방법에 의하여 정한다.

국유특허권을 이용한 제품의 총 판매 수량 또는 총판매 예정 수량×제품의 판매단가×점유율×기본율

1. “총판매수량” 또는 “총판매예정수량”을 그 실시기간중 매 연도별 판매수량 또는 판매예정수량을 합제한 것으로 한다.

2. “제품의 판매단가”는 그 실시기간중 매 연도별 공장도 가격으로 한다.

3. “점유율”은 단위제품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당해 국유특허권이 이용되는 비율로 한다.

4. “기본율”은 당해 국유특허권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총 판매가격 또는 총 판매예정가격에 점유율을 곱한 금액의 3퍼센트로 한다. 다만, 그 국유특허권의 발명의 우수성 및 실용가치를 참작하여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내로 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상공부장관이 정하는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에 의한다.

第5條 (豫定價格의 決定方法)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은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한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정한다. 다만, 전용실시권의 설정·통상실시권의 허여 또는 정부기관에 대하여 실시 승인을 할 경우에 총 판매수량을 미리 예측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에 제기한 방법에 의한 제품단위당 실시료만을 정할 수 있다.

제품의 판매단가×점유율×기본율

第6條 (隨意契約申請書)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.

第7條 (實施承認申請書)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승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.

第8條 (見積書) 영 제13조 및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견적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.

第9條 (事業計劃書) 영 제13조 및 영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
1. 사업계획 개요

2. 사업계획 내용

가. 소요자금 조달계획 (별표에 의하여 기재할 것)

나. 시설규모(생산능력을 기재할 것)

다. 연도별 생산계획 및 판매계획(수량 및 금액을 기재할 것)

第10條 (契約書)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에는 국유특허권의 표시(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에 있어서는 그 실시권의 범위를 병기할 것) 매각대금 또는 실시료, 매각대금 또는 실시료의 지급방법과 기간, 보증금액 및 계약위반시의 보증금의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.

第11條 (臺帳의 備置) ①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특허권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한 대장

[별지 제1호 서식]

수의 계약 신청서		
신청인	①성명(대표자)	②주민등록번호
	③주소	
	④기업체명	
국유특허권시	⑤권리별	
	⑥특허(등록)번호	
	⑦발명(고안)의 명칭	
⑧처분의 종류	매수, 전용실시권설정, 통상 실시권 허여	
실시권범위	⑨실시기간	
	⑩실시지역	
	⑪실시내용	
⑫매수대금 전적 금액 또는 실시료 전적 금액		
⑬수의계약신청법적근거		
국유특허권의 처분·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상공부장관 귀하 신청인 ㉑		
구비서류 1. 당해 국유특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2통 2. 매수대금전적서 또는 실시료 전적서 2통 8. 무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2통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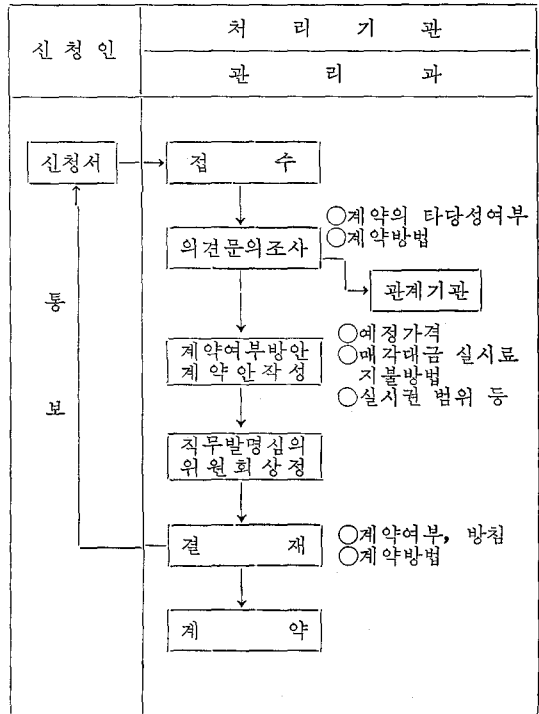
480-1-20E 190mm×268mm(신문용지 50g/m²)
1976. 7. 27 승인

[별지 제 2 호 서식]

실시 승인 신청서		
국유특허권시	①권리별	
	②특허(등록)번호	
	③발명(고안)의 명칭	
④실시기간		
⑤실시로 전적 금액		
⑥무상 신청인 경우의 법적 근거		
국유특허권의 처분·관리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상공부장관 귀하 신청기관 ㉑		
구비서류 1. 당해 국유특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2통 2. 실시료 전적서 2통(무상으로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) 3. 무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2통		

480-1-21A 190mm×268mm(신문용지 50g/m²)
1976. 7. 27 승인

위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

은 국유재산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준하여 작성한다.

②상공부장관은 국유특허권의 성질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대장을 작성할 수 없는

[별지 제 3 호 서식]

전 적 서	
국유특허 특표허시	① 권 리 별
	② 특 허(등록) 호 번
	③ 발명(고안)의 칭 명
④ 매수대금 또는 실시 시료의 전적 금액	
⑤ 매수대금 또는 실시 시료의 전적금액 산정근거 및 명 세	
년 월 일 제출자 주 소 기관명 또는 기업체명 성명 또는 대표자명 ㉑	
상공부장관 귀하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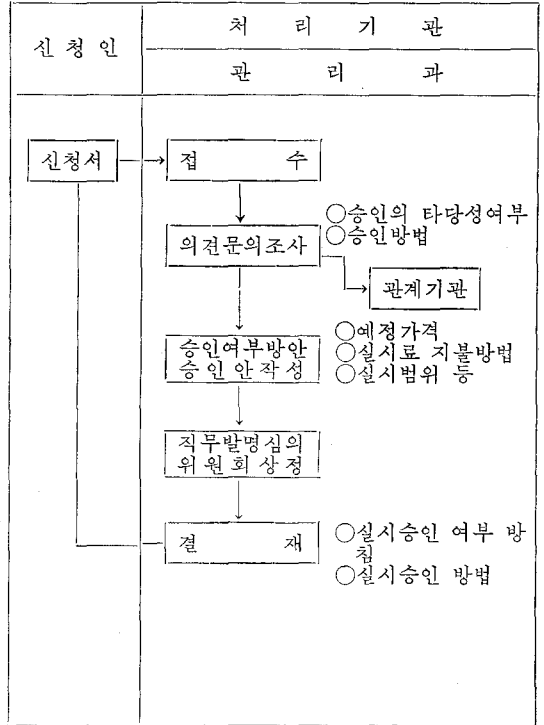
480-1-22A 190mm×268mm(신문용지 50g/m²)
1976. 7. 27승인

경우에는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작성한다.

附 則

이 규칙은 공포 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左의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

創刊11年 / 定評있는

唯一한 韓國經濟의 總覽

76年版

韓國經濟年鑑

政策樹立, 企業經營, 國內外 經濟分析,

經濟調查研究業務에 必須不可缺한 資料!

主要目次

第一部 總 說 / 75年 韓國經濟概觀	第五部 製 造 業 / 全12章	第九部 資 料 / 全8篇
第二部 國民經濟動向 / 全18章	第六部 社會間接資本·서비스業 / 全9章	第十部 經濟統計 / 國內·國際統計
第三部 農林·水産業 / 全3章	第七部 地方經濟 / 2市9道	特輯 / 韓國經濟政策30年
第四部 鉱 業 / 全3章	第八部 國際經濟 / 全3章	附錄 / 財界人士錄

豪華洋裝製本
4·6倍判 1,200余面
実費頒布価 8,000원

全國經濟人聯合會 發刊

서울特別市 鍾路區 貫鉄洞10
☎ ㉓8853 ㉓1090 ㉓7635~6